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10. 13. / 이상원 의원 외 9인
 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 - 다. 상정일자: 제27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0. 23.)
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상원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- 골목형상점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제도로,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정부·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마포구 조례는 지정 요건을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로 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상권은 지정에서 배제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고, 조례 제명에 '활성화 지원'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근거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.
- 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(30개→25개)하고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상권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(안 제2조제1호)
-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규정 신설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가. 개정 목적 및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, 같은 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개정안의 목적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고,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.
- 현행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¹⁾에 따르면,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 중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하며, 그 요건은 원칙적으로 2,000㎡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구역임.
- 다만, 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음(시행령 제2조의2 단서).

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2의 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-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실정 반영을 위해 점포 수 요건 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,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이미 15개 또는 25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.
- 반면 마포구는 여전히 30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,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은 지정에서 배제되고 제도적 지원²⁾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.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점포 수 요건을 30개 → 25개로 완화하여, 소규모 상권의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, 다양한 지역 상권의 균형적 발전 및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〈 서울시 자치구별 골목형상점가 요건 현황 〉

요건	자치구
15개 이상	7개 구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도봉구, 서초구, 용산구, 중구
25개 이상	3개 구 강북구, 서대문구, 영등포구
30개 이상	11개 구 마포구 , 강남구, 강동구, 강서구, 동대문구, 동작구, 성동구, 송파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랑구
상업지역: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: 25개 이상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: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 지역으로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	4개 구 광진구, 노원구, 성북구, 양천구

2) <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혜택 >

- 온누리상품권 가맹자격 부여(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)
- 예산지원 가능(상인교육, 경영컨설팅, 행사비용 지원 등)

나. 주요 내용

(1)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(안 제2조제1호)

- (현행) 2,000 m^2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
(개정) 2,000 m^2 이내 면적에 동일 기준 점포 25개 이상
- 마포구는 상업 밀집지역³⁾으로서, 15개 점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소규모 상권까지 지정되어 행정 효율성과 제도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.
- 이에 지역의 상권 구조, 점포 밀집도 등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, 25개 점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현행	개정안
제2조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	제2조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--- ----- -----.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<u>30개</u>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5개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3) 현재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: 총 8개

(2) 지원사업 근거 신설(안 제6조)

-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▲공동마케팅·환경개선, ▲상인교육·문화프로그램, ▲축제·홍보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.
- 참고로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·구로·강서·송파를 제외한 21개 구는 이미 유사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임.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,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.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, 디자인 개발 3.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. 축제,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.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,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, 그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또한, 지원사업 근거 조항의 신설은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 중인 상인교육·축제·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조치로서, 행정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본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지정 요건 완화로 지나치게 소규모 상권까지 포함될 경우, 상점 간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의 편차로 인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도의 공신력 저하 및 전통시장과의 경쟁 심화, 행정관리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이에 따라 지정 이후에는 정기적인 관리·평가 체계 구축과 품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사후관리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.
- 더불어,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·마케팅, 상인역량 강화 교육,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등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의원발의 조례안 사전검토 의견서

- ☐ 조례명 :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”
- ☐ 발의자 : 이상원 의원
- ☐ 검토의견

구 분	조례안 사전검토 의견
법령상 검 토	○ 상위법,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
예산상 검 토	○ 제6조(지원사업)를 추진할 경우 예산 편성이 요구됨
행정적 검 토	○ 상기(안)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더욱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○ 다만, 25개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
조 문 수 정	○ 제2조제1호 중 “30개”를 “(15개/25개)”로 한다. ➡ 제2조제1호 중 “30개”를 “25개”로 한다.
기 타 사 항	○ 해당사항 없음

※ 첨부 : 1. 검토 조례안 1부

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제11조(상점가 활성화 지원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, 제21조,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활성화 지원,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,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예 관한 특례, 국·공유지 사용료등 감면,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상인연합회,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45조,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상점가”는 “골목형상점가”로 본다.

■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